

~간접흡연 방지 대책에 관한 음식점 여러분을 위한 안내~

『흡연 목적 시설』은 취식이나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한 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

개정 건강 증진법에 근거한 간접흡연 방지 대책에 따라 2 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·매장 등의 옥내는 원칙적으로 금연해야 합니다.

흡연 구역을 설치할 때는 기준을 충족시킨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며, 그 규정은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음식점을 포함한 제 2 종 시설에는 흡연 전용실,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또는 흡연 가능실(대상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부 음식점 한정)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한편 시가 바(Cigar Bar) 등 이용자에게 흡연 구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흡연 목적 시설에는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킨 흡연 목적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취식이나 오락 등 흡연 이외의 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흡연 목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흡연 목적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

음식점을 포함한 제 2 종 시설과 흡연 목적 시설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	음식점(제 2 종 시설)			흡연 목적 시설
	흡연 전용실	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	(일부 음식점) 흡연 가능실	흡연 목적실
설치할 수 있는 흡연실			흡연 가능실	흡연 목적실
설치할 수 있는 시설	제 2 종 시설 (음식점 포함)	제 2 종 시설 (음식점 포함)	• 2020 년 4 월 1 일 시점에 기존 음식점 • 좌석 면적 100 m² 이하 • 중소기업 또는 개인 경영 • 종업원이 없음	• 흡연 구역의 제공이 주목적 • 음식을 제공하는 설비 있음 • 담배의 대면 판매(출장 판매 포함) • 통상 주식으로 인정되는 식사를 주로 제공하지 않음
설치 구역	시설의 일부	시설의 일부	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	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

■ 주의해 주십시오!

일부 업자가 「담배의 출장 판매 허가를 받으면 흡연 목적 시설이 될 수 있다(즉 모든 좌석에서 흡연이 가능한 매장으로 있을 수 있다)」와 같은 설명과 함께 출장 판매 수속을 대행해 준다는 식으로 음식점에 흡연 목적 시설이 되는 것을 권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.

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식이나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한 시설은 흡연 목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담배의 출장 판매 수속을 한다고 해서 흡연 목적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. 출장 판매의 허가는 흡연 목적 시설의 허가가 아닙니다.

도쿄도 복지보건국 보건정책부 건강추진과 사업조정 담당